

융합소프트웨어전문대학원 학사운영 내규

제 1 조 (목적) 이 내규는 본교 대학원 학칙 및 대학원학칙 융합소프트웨어전문대학원(이하 “본 대학원”이라 함) 시행세칙에서 정한 사항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과정) 본 대학원 복수학위과정은 조지아공대와 5 Module로 운영한다.

제 3 조 (수업연한) ① 석사과정 수업연한은 2년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복수학위과정은 5 Module(1Module : 3월~6월, 2Module : 7월~10월, 3Module : 11월~2월, 4Module : 3월~8월, 5Module : 9월~2월)로 운영한다.

③ 복수학위과정자로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고 평균평점 4.0이상자로,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조지아공대 석사 학위 취득 예정자이면 수업연한을 1 Module 단축할 수 있으며 3 Module 말에 신청한다.

제 4 조 (수강신청) ① 수강신청은 매학기 지정된 수강신청 기간 내에서 당해 학기(Module 포함)에 이수하고자하는 교과목을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유사교과목 및 수업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은 수강신청 할 수 없다.

② 학기별 학점 취득은 다음과 같다.

상한 취득학점	연구지도학점
18학점	2학점 (매학기 신청)

③ 단일학위과정자는 본교 타대학원과의 학점교류 소정의 절차에 따라 매학기 9학점까지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.

제 5 조 (필수이수과목) ① 석사과정의 학생은 임베디드소프트웨어세미나1(CIT517), 임베디드소프트웨어세미나2(CIT518), 임베디드소프트웨어세미나3(CIT519), 임베디드소프트웨어세미나4(CIT520)를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.

② 임베디드인턴쉽(CIT707) 이수자는 제1항의 필수이수과목 중 한 과목의 이수를 면제한다.

제 6 조 (학점인정) ① 복수학위과정 학생은 조지아공대에서 취득한 12학점을 지도교수와 주임의 승인하에 본 대학원 학위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.

② 단일학위과정자의 타대학원과 학점교류에 따른 취득학점은 최소 수료학점의 1/2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 7 조 (외국어시험) ① 외국어 시험은 외부 공인기관이 시행하는 영어 시험과 본교 국제어학원이 시행하는 졸업영어인정시험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대학원외국어시험 인정을 위한 어학강좌 이수로 대체할 수 있으며, 성적표(또는 증명서)는 종합시험 원서 접수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외부공인기관 시행 영어시험 합격 점수는 다음과 같으며 본교 국제어학원이 시행하는 졸업영어인정시험의 합격점수도 이에 따른다.

구 분	석사과정
TOEIC	700
TOEFL	CBT : 215
	IBT : 75
	PBT : 560
TEPS	600

③ 대학원 외국어시험 인정을 위한 어학강좌에서 B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자는 의

국어 시험 합격으로 인정한다.

④ 성적은 종합시험 응시원서 접수시점(종합시험 공고일)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성적을 인정한다.

⑤ 외국인(영어권)은 국제어학원에서 개설한 “대학원 외국어시험 인정을 위한 한국어 강좌(2급 이상 과정)”에서 B 이상의 성적을 취득하여야 한다.

제 8 조 (종합시험) ① 석사학위 취득을 위한 종합시험은 3과목 이내에서 시행한다.

② 종합시험의 합격 인정은 각 과목별 70점 이상으로 한다.

③ 3과목 중 일부 과목을 합격한 자에 대하여 그 과목의 면제는 1회로 한다.

제 9 조 (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) 다음 수료에 필요한 최소 학점을 충족시켜야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.

1. 석사 복수학위 과정은 교과과목 36학점, 연구지도 8학점 이상 취득하고, 평균 평점 3.0이상으로 외국어 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

2. 석사 단일학위 과정은 교과과목 36학점, 연구지도 8학점 이상 취득하고, 평균 평점 3.0이상으로 외국어 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

제 10조 (준용)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대학원학칙 및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내규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개정내규는 2011년 9월1일부터 시행한다.(제4조, 제5조 개정)

2. (경과조치) 제5조(필수이수과목)의 2011년 3월 입학생에 한하여 임베디드소프트웨어세미나1 과목 이수를 면제 한다.

부 칙

이 내규는 2012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(제4조 제3항, 제5조, 제7조, 제9조 개정)